

혼인과 가족개념의 변화에 대한 헌법적 대응

김 병 록*

목차

I. 문제의 제기	III. 변화하는 가족 유형의 다양성
II. 혼인과 이혼에 대한 개념변화	IV. 개선 방향과 대응

I 국문초록 I

가족의 구성에 있어 개인의 가치관과 취향에 따른 자율적 선택권이 보편적으로 수용됨에 따라 가족의 형태적 다양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핵가족 형태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직계가족의 형태인 2세대, 3세대 가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1인 가구나 비정형가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족생활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재혼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부모 가족,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다문화가족 등의 꾸준한 증가가 그것이다.

가족구조의 변동에 따라 이혼과 재혼, 동거 등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부계가족이나 표준가족과는 다른 유형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로 가족의 다양화란 가족의 구조 변동과 관련된 것으로 가족의 장기적 해체과정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 재혼, 동거, 미혼 또는 비혼의 증가가 가족 해체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 다양성론은 부계 확대가족이나 표준가족만을 정상(正常)가족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고집하는 편협한 보수적 가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가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교수, 법학박사

논문접수일 : 2020. 1. 3., 심사개시일: 2020. 1. 17., 게재확정일 : 2020. 1. 31.

족 다양성론은 이러한 보수적 가족주의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다양하고 전통적인 가족들이 해체되는 경향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 다양성론은 가족의 해체와 획일화에 대한 은폐(隱蔽)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변화되는 혼인과 이혼에 대한 개념과 그에 따른 변화하는 가족 유형의 다양성을 검토한 후, 헌법적 대응방안과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혼인, 이혼, 가족, 가족유형, 다양성

I. 문제의 제기

1. 결혼·가족 개념의 해체

“2030년이면 결혼 제도가 사라지고 90%가 동거로 바뀔 것”이라고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1999년 ‘21세기 사전’¹⁾에서 예언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아탈리의 분석은 특별하지 않다. 한국의 20, 30대 청년 중 절반 정도는 10년 뒤면 ‘웨딩마치가 생략된’ 사실혼²⁾ 비혼³⁾ 동거⁴⁾가 일반적인 결혼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40% 정

1) Attali, Jacques저 ; 편혜원·정혜원 공역. 서울 : 중앙 M&B, 1999, 365면.

2)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 사실혼은 법적으로는 비혼이나, 통상 기혼으로 인식된다.

3) 기혼주의를 당연시하던 시절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미혼이라고 했다. 혹은 독신(獨身)이라는 용어도 썼다. 영어 그대로 싱글(single)이라고도 한다. 비혼(非婚)은 미혼(未婚)이라는 어휘가 “혼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나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비판의식에 기반하여 ‘혼인 상태가 아님’이라는 보다 주체적인 의미로 여성학계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일반인들도 흔히 쓰는 개념이 되었다.

4) 오늘날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어울려 사는 남녀를 일러 흔히 ‘동거부부’라

도는 결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각자 삶을 사는 졸혼(卒婚)⁵⁾도 인정해야 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⁶⁾ 이미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 형태를 거부하는 1인 가구⁷⁾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가족 해체의 단면이다.⁸⁾ 전통적 의미의 결혼·가족 개념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인 남녀 간 불평등한 가사노동 관계와 계층 간 경제 불균형 심화현상이 전통적인 가족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⁹⁾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족 개념을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데 응답자의 60.1%가 찬성했다. 혼인, 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

고 한다. 이와 같은 동거부부를 옛말로 ‘뜨게부부’라고 하였다. ‘뜨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흉내 내어 그와 똑같이 하다’는 뜻도 있다. 요즘에는 얼마 뒤에 정식으로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미리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예비부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한 살림을 차렸다면 이는 예비부부라기보다는 오히려 ‘흉내 낸 부부’에 가까우며, ‘뜨게부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5) 일본어로는 소즈콘(卒婚: そつこん). 졸혼은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2004년 ‘졸혼을 권함’이라는 책을 통해 만들어낸 표현으로,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한다.
- 6) 결혼정보 회사 듀오와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함께 운영하는 듀오휴먼 라이프연구소가 ‘미혼 남녀의 혼인·이혼 인식’ 보고서를 내놨다. 전국 25~39세 미혼 남녀 1000명 중 46.9%는 10년 후 ‘사실혼(동거)’이 현재와 같은 형식의 결혼을 제치고 보편적인 결합 형태가 될 것이라고 봤다. 기존 혼인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견해는 33.9%에 그쳤다. 이 외에도 ‘계약결혼’(9.1%) ‘졸혼’(8.1%) 등이 미래에 성행할 결혼의 모습으로 꼽혔다.
- 7) One Person Household, 가구원이 한 명인 가구로, 2000년대 이후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이혼율 증가와 함께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1인 가구 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8)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16년 27.6%까지 증가해 2020년까지 그 비율이 29.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85335>

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10명 중 7명(67.5%)이 찬성하는 등 ‘결혼한 남녀-자녀’로 이뤄지는 고정적 의미의 가족에 대한 정의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¹⁰⁾ 가족에 대한 넓어진 수용성은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도 이어졌다. 응답자의 66%는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 등¹¹⁾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동을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란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도 응답자의 75.6%가 찬성했다. 자식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성우선주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4%는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국제 결혼(92.5%), 이혼·재혼(87.4%)은 10명 중 약 9명이, 비혼독신은 10명 중 약 8명(80.9%)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무자녀 부부(67.1%)와 비혼 동거(65.5%)에 대해서도 10명 중 약 6명이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것이나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에는 각각 응답자의 44.5%, 25.4%만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도를 보였다.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입양된 자녀(79.1%), 한부모가족 자녀(78.3%), 다문화가족 자녀(74.7%), 재혼가족 자녀(74.1%)를 찬성

10)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FPPQE1M>

11) 예컨대, 폴리아모리(polyamory)는 일부일처제를 고집하지 않고 배우자의 또 다른 애정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독점하지 않는 다자간 사랑, 비독점 다자 연애를 뜻한다. 또한 living apart together는 미혼 남녀가 같이 살지는 않지만 친밀한 관계는 유지하는 상황이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LAT로도 표기함)을 의미한다.

한다는 응답자는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부·모 가족의 자녀(57.6%)와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45.3%)는 다른 가족형태에 견줘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밖에 한부모가족(94.1%), 미혼부·모 가족(88.9%), 1인가구(73.9%)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전반적으로 높았다.¹²⁾ 이 조사 결과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차별을 해소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2. 변화에 대한 헌법적 대응: ‘비정상 가족’ 없는 사회를 위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은 결혼과 혈연 중심 집단, 즉 혼인 관계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가리킨다. 인간은 그런 가족 안에서 태어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우리 시대 가족의 모습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고령화 추세로 노인가구가 급증하는가 하면 한부모, 다문화, 재혼, 맞벌이 가정 등 갈수록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비정상’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희경 작가의 [이상한 정상가족]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차별·폭력 문제, 한국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산다는 것 등 지나치게 강한 ‘가족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한다.¹³⁾

12)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11304.html#csidx41ff8dd73a8b1619bc7624bb3826a9a>

13) 친권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당연한 권리가 아님에도 교육을 빙자한 폭력과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불가해한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바람직한 가족상’

작가는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스웨덴의 예를 들어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복지선진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에서는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현실에 맞는 아동수당 지급, 부모교육, 육아휴직, 차별금지 등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사회시스템으로 체계화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한 정상가족]은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개인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¹⁴⁾

패러사이트 싱글(パラサイトシングル, parasite single)은 일본에서 유행한 신조어로서, 경제적 독립을 이뤄내지 못한 주로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이후의 독신자, 혹은 잠재적 독신자로서 대부분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잠시 종사하며 대부분 부모의 경제력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¹⁵⁾ 1990년대 등장한 이 ‘잠재적 독신자’ 수는 2016년 158만명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부모 세대가 어느덧 70~80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이들은 가족과 사회 어느 쪽에도 흡수되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일본 주오대학 사회학부 교수인 야마다 마사히로는 이들을 ‘가족 난민’으로 재정의 한다.¹⁶⁾ 저자는 프

이 아닌 가족형태를 ‘비정상가족’이라 규정하며 차별을 자행하는 현실을 작가의 경험과 통계를 바탕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김희경, 동아시아, 2017.11.21.)

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222213005&code=960205#csidxea54cf6115fddc39f3e8964ab231552

15) 자라중후군이라고도 하는데, 부모의 곁에서 떠나려 하지 않는 자라의 특성을 빗댄 용어이다. 경제적·정신적으로 자립심이 부족해 계속해서 부모에게만 의존하려는 젊은 세대를 일컫는다. 켄거루 새끼가 어미의 주머니 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빗댄 신조어 ‘켄거루 족’이나 ‘패러사이트 싱글’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자라 중후군’, ‘켄거루 족’, ‘패러사이트 싱글’ 등은 모두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지해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

롤로그를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고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섰지만, 그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상태를 포착하기 위해 난민 개념을 차용했다”고 밝혔다.

가족 난민이 증가한 이유는 ‘남편은 직장, 아내는 가사’라는 가족 정의가 시대 변화에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구시대의 표준가족 형태를 정상가족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를 것을 규범으로 삼는 관행이 역설적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표준가족을 전제로 설계된 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나 친족이 아니어도 의지가 되는 사람들끼리 거주 공간을 공유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의와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¹⁷⁾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 유형 외에도 1인 가족, 동거 가족, 한 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늘 존재해 왔고, 최근 들어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또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생각도 젊은 세대로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최근 정부 차원의 인식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있다. 청와대는 ‘일·가정 양립’이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일·생활 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¹⁸⁾ ‘일·가정 양립’이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보는 측면이 있기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동거 부부에게도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에서 받는 차별을 완화해 법적 부부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16) 야마다 마사히로 지음, 니시야마 치나·함인희 옮김, 가족 난민, 그린비, 2019, 224면.

17) 야마다 마사히로 지음, 니시야마 치나·함인희 옮김, 위의 책 225면.

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22243005&code=940100#csidx269c1be85b6ecd8956799aae150cb25

중이다. 여전히 가족에 대한 관념은 생부와 생모, 자녀로 구성된 핵 가족에 갇혀 있다. 정책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본고에서는 변화되는 혼인과 이혼에 대한 개념과 그에 따른 변화하는 가족 유형의 다양성을 검토한 후, 헌법적 대응방안과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과 제도¹⁹⁾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혼인과 이혼에 대한 개념변화

1. 혼인개념 변화의 필요성

사회환경, 문화, 인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 혈연 및 혼인 관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동반자 관계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혈연 또는 혼인 외의 이유로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기존의 가족관계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²⁰⁾

현재의 혼인제도가 다변화된 가족 형태의 다양한 욕구를 담기 어렵다면, 혼인과 유사한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두 사람 간의 계약 관계라는 혼인의 본질은 담되, 그에 따른 권리나 혜택은 혼인보다 가볍게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적 효력으로 상대방 친족과의 인척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상속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성립, 해소, 효력 면에서는 혼인보다 가볍다. 그러

19)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11304.html#csidxeed731020842c7988e4799e560c1009>

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22243005&code=940100#csidxf4099fad19d5980959ed71020a739cd

나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 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혼인과 유사하다. 이 밖에 두 사람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해 주거, 세제, 공공보험, 사보험, 사후 연금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에서 혼인과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다양한 형태의 혼인 유형

1) 생활동반자 관계

한국에서는 아직 생활동반자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국가에서는 이미 1990년대 이후부터 이와 유사한 시민결합(Civil union), 등록파트너십(Registered Partnership) 등의 제도를 도입해 왔다.²¹⁾ 현재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칠레, 콜롬비아, 호주, 베네수엘라, 크로아티아, 체코,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미국 일부 주, 멕시코 일부 주 등이 시민결합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제도의 설계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주거나 보험, 배우자 혜택, 기타 다른 사회 서비스 등에서 결혼 관계와 파트너십 관계 사이에 원칙적으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은 유사하다.

21) 시민결합 제도는 국제적으로 확고히 정해진 기준과 규격이 없기 때문에 명칭 또한 언어, 국가, 지역, 법안별로 상이하다. 시민동반자관계(Civil partnership), 등록된 동반자관계(Registered partnership), 가정동반자관계(Domestic partnership), 생활동반자관계(Life partnerships), 중요관계(Significant relationships), 상호수혜관계(Reciprocal beneficiary relationships), 성인상호의존관계(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 관습법적 혼인(Common-law marriage), 시민연대계약(Civil solidarity pacts)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한다. 서로 다른 명칭만큼이나, 심지어 같은 명칭으로 불리더라도, 제도별로 보장해주고 있는 권리와 의무 또한 그 정도가 각기 다르다.

프랑스는 1999년 11월 시민연대계약(PACS)²²⁾을 입법했다. PACS가 체결되면 두 사람 사이에 재산상 효력은 발생하지만 신분 관계의 변동은 생기지 않는다. PACS가 체결되어도 싱글(single)이라는 법적 지위 자체를 유지하게 되며 혼인과 달리 혈족 및 인척 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계약 관계의 종결 또한 이혼보다 훨씬 쉽다. PACS 신고와 동시에 연대 의무가 발생하는데 서로 경제적 부양 의무를 지고 가사와 공동의 주거에 드는 비용에 대해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재산상 효력 또한 결혼에 비해 낮아서 유언장 없이는 법적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해마다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PACS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혼외 출산은 1970년 10%대에서 2014년 6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²³⁾

2) 동성결혼(同性結婚)

동성결혼은 생물학적으로 같은 성(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인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인식되어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법에도 그와 같이 되어 있다.²⁴⁾ 하지만 최근,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해 주는 지역이나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1년 4월 1일 전 세계에서는 최초로 네덜란드가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해 주었

22) 시민연대계약(PACS)은 1999년 프랑스에 도입된 성인 간의 시민 결합 제도다. 결혼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동거의 유연성과 결혼의 보장성을 결합한 가족 구성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23) PACS는 당초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을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2016년 통계에 의하면 PACS를 선택한 커플 중 96%가 이성애자 커플이다. 아울러 이 제도를 선택한 사람은 2000년 2만2000명에서 2016년 19만2000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PACS는 프랑스에서 2013년부터 인정된 동성혼과 별도로 유지되고 있다.

24) 평등혼 또는 평등결혼(Marriage equality 또는 Equal marriage)은 동성결혼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으며 이후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잇따라 허용해 주었다. 하지만, 동성결혼은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성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릴 뿐 아니라, 법 중의 법인 ‘헌법’을 변경해야 할 만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이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적 갈등이 적지 않다.²⁵⁾

20세기 후반부터 LGBT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24개국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인권과 시민권에 기초하여 동성결혼을 전면적으로 혼인의 형태로 포섭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영국(북아일랜드 제외), 멕시코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35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²⁶⁾

3) 폴리아모리(polyamory)

‘많은’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폴리(poly)’와 ‘사랑’이라는 뜻의 라틴어 ‘아모르(amor)’의 변형태인 ‘아모리(amory)’의 합성어로, 서로를 독점하지 않는 다자간(多者間) 사랑, 즉 두 사람 이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파트너의 동의하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바람 피우기’ 또는 ‘스와핑’²⁷⁾과는 구별된다. 폴리아

25)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 김조광수, 김승환씨는 자신들의 혼인신고를 허용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현재 우리나라 법에 근거해서는 동성결혼을 허용할 수 없다며 이들의 요청과 항소까지 모두 기각했다.

26) 자세한 것은 김병록, 동성결혼의 헌법문제, 동아법학, 2009, 1면 이하 참조.

27) 스와핑은 ‘교환하다, 바꾸다’를 뜻하는 스와프의 명사형으로, ‘부부를 교환하다’라는 속어로도 쓰인다. 속어로 쓰일 때는 두 쌍 이상의 부부가 배우자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혼음을 하거나, 부부끼리 서로 상대를 바꾸어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스와핑은 고대 그리스를 비롯해 각국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행해

모리를 지향하는 사상을 폴리아모리즘(polyamorism), 폴리아모리를 행하는 이들을 폴리아모리스트(polyamorist)라고 한다. 폴리아모리스트들은 전통적인 혼인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한 사람에 얽매이지 않는 연애 생활을 추구한다. 이들은 모노가미(monogamy) 즉 일부 일처제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결혼 제도라 하여 이를 비판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여러 파트너와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폴리아모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폴리아모리스트들은 파트너에 대한 헌신과 친밀감 등의 정신적 유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폴리아모리를 행하는 이들 중 일부는 여러 파트너로 이루어진 그룹을 형성하여 해당 그룹 안에서 다양한 정신적·육체적 관계를 맺으며 일종의 가족 관계를 이룬다.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재산도 공유하는데 이런 형태의 집단혼을 폴리피델리티(polyfidelity)라고 부른다.²⁸⁾ 폴리아모리 운동은 1970년대부터 태동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 성정치적·문화적 화두로 대두되었으며,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동성결혼에 이은 차세대 인권운동의 패러다임으로 여겨지고 있다.²⁹⁾

졌다고 한다.

- 28) 일부다처제 또는 일처다부제 등의 복혼제를 뜻하는 폴리가미(polygamy)가 종교적 또는 지역적 전통에 의하여 규범화된 결혼 제도라면, 일부일처제라는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나 공동체 가족 관계의 새로운 결혼 형태를 제시하는 폴리아모리는 문화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 29) 미국의 사회심리 전문가들은 2019년 현재 미국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50만 명이 넘는 폴리아모리스트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폴리아모리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모임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984년 설립된 ‘러빙 모어(Loving More)’라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잡지를 발행하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일 년에 두 차례 씩 정기 모임을 연다.

4) 별거혼(living apart together)

넓은 의미로는 가족이 함께 살지 않고 별도로 생활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는 부부가 따로 생활하는 가족의 형태이다. 미혼 남녀가 같이 살지는 않지만 친밀한 관계는 유지하는 상황이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LAT)³⁰⁾도 포함한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가정의 근무지에 따라 모든 가족이 이사를 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와 상황에서의 불안과 불편함을 느낀 가족들, 즉 어머니(아내)와 자녀가 아버지(남편)의 근무지로 함께 이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따로 거주하는 형태의 가족이 이에 속한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병리성의 별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면, 자녀의 가정 내 폭력이 심해짐에 따라

30) Couples living apart together (LAT) have an intimate relationship but live at separate addresses. LAT couples account for around 10% of adults in Britain, a figure which equates to over a quarter of all those not married or cohabiting. Similar figures are recorded for other countries in northern Europe, including Belgium,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Norway and Sweden. Research suggests similar or even higher rates in southern Europe, although here LAT couples often remain in parental households. In Australia, Canada and the US representative surveys indicate that between 6% and 9% of the adult population has a partner who lives elsewhere. LAT is also increasingly understood and accepted publicly, is seen by most as good enough for partnering, and subject to the same expectations about commitment and fidelity as marriage or cohabitation. Within Asia, "walking marriages" have been increasingly common in Beijing. Guo Jianmei, director of the center for women's studies at Beijing University, told a Newsday correspondent, "Walking marriages reflect sweeping changes in Chinese society." A "walking marriage" refers to a type of temporary marriage formed by the Mosuo of China, in which male partners live elsewhere and make nightly visits. A similar arrangement in Saudi Arabia, called misyar marriage, also involves the husband and wife living separately but meeting regularly.

부모가 신체적 위협을 느껴 원가족 으로부터 떠나 별거생활을 시작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자녀가 강력하게 나가고 싶다는 요구를 하여 별거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별거가족으로는 가정 내 별거의 형태를 취하는 가족도 적지 않다. 아내와 자녀에게 고립된 남편이 한 가정 속에서 별도의 생활을 하는 경우와 자녀가 없는 부부가 한 지붕 밑에서 별도로 생활하는 경우도 별거가족에 해당한다.³¹⁾

5) 졸혼(graduate from marriage)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신조어, 배우자와 더불어 가장 나답게 살기 위해서, 일상에서 내 삶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결혼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졸혼은 고령적인 부부 관계나 역할을 탈피한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³²⁾ 지난 2004년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杉山由美子)의 ‘졸혼 시대’(원제: 졸혼을 권함)에서 시작된 신조어인 ‘졸혼’은 말 그대로 ‘결혼 관계를 졸업한다’는 의미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사는 공간과 각자의 생활, 취미 등을 간섭하지 않는 형태다.

하지만 졸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까지 곱지 않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2018 은퇴백서’에 따르면 남성 은 22%, 여성 은 33% 정도만이 졸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부부의 개념을 넘어 제2의 삶을 찾는 계기’ 보다는 ‘황혼 이혼

31) 김춘경·이수연·이윤주·정종진·최용용, 상담학 사전, 2016. 01. 15.

32) 스기야마 유미코는 ‘졸혼’이라는 말을 만든 장본인으로 40대에 찾아온 남편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던 중 첫째 딸의 권유로 남편과 따로 살아보기를 시작한다.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면서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던 그녀는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며 사는지 생각하던 중 직접 인터뷰를 하기로 결심한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 부부 관계와 역할을 새롭게 바꾼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이들의 공통점을 ‘졸혼’이라고 붙인 것이다.

을 미화하며 별거와 파경을 합리화하는 말'이라는 비판적 인식이 더 높은 셈이다. 졸혼은 가정이 깨어진대도 법적 정리를 못해 차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졸혼의 실체라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가부장제에서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졸혼이 가장 유리하다. 남성은 부양의 의무 등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막을 수 있고, 여성은 집안일에서 자유로워지며 사회적 활동을 보장 받는 등의 장점이 있다. 또 졸혼은 이혼 대신 선택하는 가족도피처가 될 수 있어 졸혼 자체는 비판적으로 봐야 하지만 졸혼을 선택하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가족 시스템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두 사람 가운데 상대적) 약자가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혼 가족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 등이 필요하고, 이혼한 여성들을 이혼녀라고 부르는 등의 사회적 시선이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가족 시스템이 유지되면 졸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³³⁾

6) 비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처음 보는 이에게 나이나 사는 곳만큼 혼하게 묻는 질문이 있다. “기혼이세요, 미혼이세요?” 이제는 여기에 한 질문이 더 추가가 될지도 모르겠다. “비혼이세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1인가구의 비중이 커지면서 결혼을 굳이 하지 않겠다는 비혼족이 늘고 있다. 현대 우리 사회에서 비혼은 더 이상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철학으로만 지나지 않는 것이다. 비혼과 미혼은 둘 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둘은 모두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일까?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그 이면을 바라보면 전혀

33) CBS노컷뉴스 2019-04-22 15:57(paladin703@cbs.co.kr)

다른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음을 뜻하는 ‘미혼(未婚)’은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으나 언젠가는 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혼(非婚)’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만을 뜻하며 이는 시간적인 가능성에 대한 논점 자체가 없다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비혼족들은 더욱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³⁴⁾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지 않음을 일컫는 비혼은 자발적 비혼과 비자발적 비혼이 혼재되어 있다. 자발적 비혼은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비자발적 비혼은 결혼을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로 받아들여진다. 자발적 비혼은 학교, 직장, 진로, 인간관계와 같이 결혼 역시 개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선택 사항일 뿐이라는 관점이다. 자유의지로 독신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주위의 지나친 간섭이나 참견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례가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비자발적 비혼의 주된 요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꼽힌다.³⁵⁾

7) 국제결혼

국제결혼은 국적이 다른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혼인이다.³⁶⁾ 국제

34)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총 26만 건으로 2011년 이래 7년 연속 감소하며 가장 낮은 수치를 드러냈다. 이는 인구 1,000명 당 단 5건의 혼인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2018년 사회조사’에서도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48.1%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도 전체의 3%에 달해 결혼에 대한 달라진 시대상을 보여줬다.

35) KB금융경영연구소가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혼 의향 가구 중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중은 1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 생활의 걱정거리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대상 중 40.4%가 ‘외로움 등 심리적 안정’을 토로했지만, 미래의 우려에 대해선 58.8%가 ‘경제활동 지속력’을 꼽으며 경제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팍팍한 현실 또한 비혼과 맞닿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6) 샌즈(Saenz)와 같은 학자는 국제결혼을 ‘전쟁신부결혼’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

결혼이 한국사회에서 주목받게 된 것은 해방 이후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미국인 병사와 한국인 여성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부터이다. 당시에는 미군 기지촌 주변에서 성매매를 계기로 이뤄진 국제결혼이 대다수였는데, 이것이 곧 국제결혼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다. 이후 1970~1980년대를 거쳐 해외 유학, 해외 근무 등의 경험 속에서 외국 남성이나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대두되면서, 기존 미군과의 국제결혼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는 다소 완화되었다. 그 후 1980년대 말부터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한계계층 남성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추진되었고 재중 동포인 조선족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국제결혼은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현재 전체 혼인의 10%를 넘어섰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국제결혼은 계층의 양극화와 농촌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주변부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국제결혼은 국가(특히 지방자치단체), 종교(통일교), 시장(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동적인 개입과 정상가족(normal family) 이데올로기 등 사회문화적 장치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급증한 사회 현상이다. 결혼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시 중 하류층과 농촌의 남성들은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의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국제결혼을 통해 가족재생산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국내로 이주한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주로 가난한 국가 출신의 여성들이 보다 잘사는 국가로 결혼이주를 하는

도 한다. 즉 미국이 아시아에 오래 주둔하면서 미군과 주둔국의 여성 사이에 전쟁신부가 발생한 데서 비롯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전쟁신부인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에 비해 고유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특성을 지녔다고 한다.

글로벌 상향혼(global hypergamy) 경향을 보인다.³⁷⁾

현재 한계 계층 남성의 국제결혼만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유학과 여행 및 취업 등으로 외국인과의 접촉이 활발히 전개되어,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사회 계층 면에서 자신과 유사한 지위의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도 일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동남아 남성과 한국 여성이 결혼하는 추세 역시 드물지 않다. 이는 결혼이 개인주의화 되면서, 국적이나 인종보다는 개인 간 친밀감이 중요 요소로 부각되는 데 따른 결과이다.³⁸⁾

3. 이혼 관념의 변화와 대응

1) 이혼의 역사

이혼³⁹⁾은 혼인의 본래적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기하고 사회 기초단위인 가족의 해체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이는 혼인제도와 함께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각 사회의 습속, 도덕, 종교, 정치 등의 존재양식에 따라 변천해 왔다. 동양에서는 혼인을 천합(天合)이라고 하여, 모든 인간관계의 뿌리로 여겼다. 이는 가부

37) 국제결혼 [international marriage, interracial marriage, mixed marriage]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8) 한국 전체 결혼 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1990년 1.2%에서 2009년 10.8%(총 309,759건 중 33,300건)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적별 결혼 이민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5월 기준으로 중국(조선족 포함)이 89,456명(61.9%)으로 절대적 다수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21,150명(14.6%), 필리핀 7,826명(5.4%), 일본 (4.4%)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의 급증과 동시에 국제결혼의 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11,200건으로 전체 이혼 중 9.6%를 차지하였다.

39) 최초의 무과실(無過失) 이혼 법은 1969년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되었다. 일부 미국 원주민의 이혼관습은 남편의 신발을 문 밖에 두는 것이다.

장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기독교의 신합(神合) 사상에 입각한 이혼 금지주의와 달리 남자의 전권이혼(專權離婚)을 제약하지 않았다.

이혼의 역사는 결혼의 역사 못지않게 길다.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미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에도 이혼은 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혼할 때 이혼요청서를 판관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구해야만 했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남편과 아내 누구나 이혼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혼이 성립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주 드물었다. 유대법도 게트의 권리, 즉 법적·종교적 구속력이 있는 이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혼조항은 혼인계약서의 일부로서 모든 유대식 혼인서약서, 즉 케투바에 명시된다.⁴⁰⁾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이혼의 역사에서 흥미로운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역사적으로 많은 사회와 문화권에서 이혼을 허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혼에 관한 일종의 권한이나 제한에 대한 장치 역시 지속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결혼의 끝’은 일종의 감시감독이 필요한 주요 사안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통상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전적으로 금지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초기 신성로마제국시대의 황제 가운데 몇몇은 실제로 이혼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혼과 그 반대의 이혼 무효에 관한 소송은 꾸준히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결혼의 신성함은 둘에서 하나를 생산하는 것이고, 이 구속을 깨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교시하게 되었다. 결혼을 통해 사회

40) 유대인의 혼인계약서인 케투바(ketubba)는 아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문서로서 이혼, 즉 게트(gett)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한다. 물론 이 계약서와 이혼에 관한 조항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 유대식 결혼에서는 모든 것을 남편이 소유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케투바와 게트에 종종 두 사람의 인격적인 동등함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기도 하지만, 케투바와 게트의 법적 구속력은 여전히 그 어느 시대 못지않게 강력하다.(베탄 패트릭, 존 톰슨, 이루리, 2014. 11. 15.)

적·법적 신분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심지어 이혼이라는 행위 자체가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이혼은 대중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혼은 여성과 아이 같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불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이 완전하게 사라질 수는 없었는데, 이는 배우자가 이혼을 통해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으로 이주할 권리를 얻기 전까지 수 년 동안 은신처를 찾다가 미국에 정착한 도덕적으로 엄격한 네덜란드 청교도들이 보다 시민적이고 종교적인 구속이 덜한 네덜란드의 이혼 기준을 함께 가져왔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 이혼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이를테면, 청교도와 신교가 연합한 북부에서 성공회와 가톨릭교가 연합한 남부보다 이혼의 허용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견지했다.⁴¹⁾

2) 현황

1960년 제정 민법은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였으나 1977년 개정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재판상 이혼 원인에서는 이전의 열거주의를 지양하고 예시주의를 채용하는 동시에 부부가 평등하게 不貞行爲를 이혼 원인으로 하였다. 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이혼 후 자녀양육문제에 대해 부부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관여

41)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가 이혼을 법제화 하지 않았다가, 1949년에서야 비로소 이를 법제화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837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나 모에게는 면접교섭권⁴²⁾을 보장하고(제837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다(제839조의 2). 이후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문제와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제도를 갖고 있는 소수의 국가로, 당사자 합의로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혼의 80% 이상이 협의이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유로운 해소를 중시하여 너무 쉽게 이혼을 인정했다는 반성과 이혼 후 자녀 등의 복리를 고려하여, 협의이혼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7년 개정 민법에서는 이혼 熟慮其間制와 상담권고제를 도입하여 협의이혼 당사자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사항에 대해 협의를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2009년 개정 민법에서는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에 강제 집행력을 부여하여 양육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⁴³⁾

42)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직접 만나거나 편지 또는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2005년 개정 「민법」 제837조의2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의 「민법」에서는 자의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다. 면접교섭권의 성질은 부모와 자녀에게 주어진 자연권인 반면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양육권으로 실현되고 또한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면접교섭이 부모의 협의나 조정 또는 심판으로 인정된 경우 자와의 면접, 서면교환, 전화, 선물교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43)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의 이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0년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소송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소송이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

3) 의의와 평가

인간생활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은 피할 수 없고,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혼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자유 또한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혼인과 달리 이혼은 이미 형성된 혼인공동체를 해소하는 것으로, 사회 및 자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혼에 의한 파장을 최소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Ⅲ. 변화하는 가족 유형의 다양성

1. 가족의 기능과 변화

가족이란 일반적으로 혼인과 혈연 및 입양으로 하나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함께 거주하는 집단 혹은 공동체를 의미한다. 가정(家庭)이나 가솔(家率)이라는 말로도 지칭되는데, 가정은 가족의 구성원이 주거를 함께하는 장소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가솔은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가족은 가구(家口)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취사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가구와는 구분된다.⁴⁴⁾

가족이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

문화 가정의 해체와 그에 따른 법적·경제적 지원 문제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겠다.

44)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로 1인 가구나 조손 가구 등 가족 내 가구 분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재에는 더욱 구분이 명확해 지고 있다.

회의 단위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계 활동을 하는 친밀한 일차적 관계 중심의 사회 집단이다. 사회학적 측면에서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인식하며, 개인이 아닌, 사회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기초적인 단위이므로 흔히 운명 공동체, 혈연 공동체, 거주 공동체, 경제 공동체 등으로 표현한다. 가족은 일반적으로 확대 가족⁴⁵⁾과 핵가족 또는 대가족과 소가족, 일부일처제 가족과 일부다처제 혹은 일처다부제 가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오늘날에는 다양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 모자 혹은 부자로 구성된 한 부모 가족과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조손 가족,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혹은 미혼부 가족, 국제결혼이나 결혼 이민으로 생겨나는 다문화 가족, 자녀 없이 부부로 구성되는 이른바 덩크족⁴⁶⁾과 독신 가족 등이다. 특히 독신 가족은 1인으로 구성되어 가족으로 정의되기 어려우나,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이유로 독신이 늘어나고 있어 노령화로 인한 1인 가구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라 독신 가족⁴⁷⁾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또한 가족의 기능도 변화되고 있다. 전통 사회의 다양한 기능 중 재생산의 기능⁴⁸⁾과 정서적 기능⁴⁹⁾만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자급자족적인 전통 사회의 생산 활동을 하는 경제적 기능이나, 가부장의

45) 부부와 미혼 자녀 외 직계 존·비속이 결합된 가족

46) DINK족, Double Income No Kids라는 뜻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지칭한다.

47) 독신 가족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해요.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나 홀로 가족', '1인 가족'이라고도 부른다. 독신 가족이 늘어나는 이유는 오늘날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48)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이 오락과 휴식을 취하고 노동력을 생산하는 기능

49) 가족 구성원의 情意的이고 愛情的인 관계기능

권위가 강조되는 정치적 기능, 종교적 기능,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교육적 기능 등 가족의 주된 기능들은 전문화된 사회 제도 속에 포함되어 사라져 버렸다. 가족의 형태 다양화로, 그에 따른 사회 복지 및 사회 제도 분야와 주택 수요 예측 등 여러 분야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가족의 기능이 이전에 비해 약화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정서적 기능과 재생산의 기능을 통해 사회의 기초 단위로 존재하고 있다.

2. 다양한 형태의 가족 유형

1) 가족 형태의 다양화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 유형 외에도 1인 가족, 동거 가족, 한 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늘 존재해 왔고, 최근 들어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더 이상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가 될 수 없다.⁵⁰⁾ 또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생각도 젊은 세대로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48%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에서는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가 60%를 넘어섰다.⁵¹⁾ 이처럼 가족 형태와 결혼관은 급변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50) 조영태,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 북스톤, 2018, 288면.

51) 서울시만 떼어서 보면 2000년 서울시 전체 가구 중 4인 가구 비중이 32%였는데 2010년에는 20%로 줄었다. 통계청 예측으로는 2020년이면 17%, 2025년에는 14%로 줄어든 것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분화하면서 가구원 수가 줄었다면 이제는 결혼과 출산이 줄면서 생긴 결과다. 나이가 2025년에는 3인, 4인 가구를 합쳐도 30%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가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강고하다.⁵²⁾ 사회가 근대화되면 가족이나 집단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개인화도 같이 진행된다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만큼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화됐는데도 여전히 가족주의의 영향이 뿌리 깊다.

가족변화에 관련한 통계도 부족하다. 동거 가족의 경우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동거가족을 인구센서스에서 조사하고 있다. 한국은 통계로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⁵³⁾ 동거는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방법으로 미래학자들은 이를 가족 해체 혹은 붕괴가 아닌 결혼의 현대화, 다양화라고 이야기한다. 정책이 현실을 늦게 따라가게 되면서 사회적 약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통계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구체적 통계가 전무하다보니 정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안에서는 여전히 ‘돌봄’이 가족의 몫이다. 부양의무제의 부작용이 많은 데도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가족이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족주의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⁵⁴⁾ 30대 후반부터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추세다. 이들이 노년이 됐을 때 가족이 해 오던 부분이 사라지는 건데 사회가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준비해야 한다. 여전히 가족에 대한 관념은 생부와 생모,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에 갇혀 있다. 정책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52)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시아, 2017, 1면.

53) 변수정,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12월.

54) 김희경, 앞의 책, 2면.

2) 1인 가구, 독신가족

대한민국 4가구 중 1가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다. 통계청은 국내 1인 가구가 2016년 523만, 2017년 540만, 2018년 556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전체 가구 중 약 30%에 달하는 수치다. 멀지 않은 미래인 2035년에는 763만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1인 가구는 이제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을지 모른다.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한 1인 가구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형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⁵⁵⁾’, ‘싱글슈머(singlesumer)⁵⁶⁾’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혼밥, 혼술 등 ‘나홀로 소비’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낳았다. 이에 맞춰 유통업계는 자신만의 삶을 즐기는 1인 가구의 소비 패턴에 최적화된 상품들을 내놓으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⁵⁷⁾ 앞으로 1인 가구가 더욱 늘어나면서 ‘나 혼자

55) 1인 가구의 증대에 따라 기업들이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을 집중 개발해 판매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국의 경우 높게 나타나는데 2015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37.9%, 일본 32.7%, 영국 28.5%, 미국 28.0%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7.2%인데, 이는 1990년 9.0%, 2000년 12.5%, 2005년 20.0%, 2010년 23.9%에 비해 확연히 불어난 수치이다. 1인 가구가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게 된 이유로는 경제난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고 혼자 사는 ‘나홀로족’, 경제적 여력은 있지만 결혼 생각이 없는 ‘골드미스터·골드미스’ 등이 늘어난 때문이다.

56) 혼자라는 뜻의 싱글(single)과 소비자라는 뜻의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자신의 생활 패턴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실용성과 접근성을 중요시해 대형마트보다는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며 소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선호한다.

57) 또 하나의 가족, 1인 가구(세계와나, 2017.03.15.)는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왜 1인 가구를 선택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준다. 현장 기자들이 1인 가구의 실태를 취재한 기사를 스토리 형태로 엮어서 1인 가구의 생활, 소비행태, 문화 등 다양한 사례를 모은 점도 눈에 띈다.

시대'에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일상적 풍경이 될 것이다.⁵⁸⁾

3) 재혼가족, 복합가족

재혼가족은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한 후 다시 새롭게 다른 가족과 결합하면서 탄생하는 가족을 일컫는다. 이미 자식이 있는 남녀의 재혼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복합가족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당사자들에게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결합되는 만큼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재혼을 결정한 부모들은 가족으로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마음가짐을 지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열망적일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 반대의 감정을 지닐 경향이 높다. 이전의 환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이다.

잘 알지 못하는 이들과 가족이라는 관계를 맺어야하는 부담감에 더해 집안의 규칙이 갑자기 바뀔 수 있으며, 안정감이 상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이를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양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대 아이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보살피고 신뢰감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붓자식과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해 일반적인 가족과 마찬가지로의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일부 아이들은 이전의 친부모와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지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이와 별개로 자신 역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고 편안함을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의붓자매나 형제간 관계는 더 세심

58) 더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1인 가구 몇 사람이 살림을 합쳐 함께 모여 사는 이른바 '간헐적 가족'이라는 주거공동체도 등장하고 있다.(KBS 뉴스9, 2019.11.08.)

하게 신경써야한다. 어린 아이들이라면 어려서부터 강한 형제애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대감을 구축하고 유지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 이처럼 의붓부모 및 의붓형제자매 간 강한 유대감 구축은 아이의 건강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⁵⁹⁾ 그러나 아직까지도 재혼 가족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편견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재혼가족이 사회적으로 공평한 시선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과 인식이 제고되어야할지를 고민해야 한다.⁶⁰⁾

4) 조손가족, 소년·소녀가족

부모 없이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와 손자 혹은 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 형태를 조손가족⁶¹⁾이라고 한다. 조손 가족은 부모의 취업이나 자녀의 학업, 또는 부모의 이혼, 재혼, 사별 등의 이유로 인해 조부모와 손자 손녀가 살아가는 가족의 형태이다. 사회 변동에 따라서 가치관과 생활양식도 변하여 가족의 기능과 가족의 형태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1인 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고,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여 이혼과 재혼 가족들도 증가하고 있다. 조손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윗세대의 지혜와 연륜을 전수받을 수 있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손자손녀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과 양육 부담감, 건강 문제 등도 안고 있다.

소년 소녀 가족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

59) 전문가들은 재혼가족을 ‘보너스 가족’이라는 용어로 대체해 긍정적인 관심을 도모할 것을 권장한다.

60) 미국에서도 전체 인구의 1/3가량은 재혼가족을 구성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재혼가족은 이제 흔한 수식어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1/3가량이 재혼가족이며 매일 새롭게 탄생하는 재혼가족도 1,300가구에 이를 정도다.

61) 만 18세 이하인 손자나 손녀와 65세 이상인 조부모로 구성된 가족이다.

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는 세대를 가리킨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는 8,100여 세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증가 원인은 가족체계의 붕괴에 따른 이혼을 급증이다. 소년 소녀 가족의 대상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로,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 나뉜다.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친·인척 등에게 가정 위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⁶²⁾

5) 편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Single parent family)이라고 할 수 있는데,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이혼·별거·유기(遺棄)·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편부모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한부모가족은 주로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이유로 한쪽 부모가 부재하여 생긴 가족의 형태다. 혹은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하여 기르는 가족의 형태도 한부모가족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이러한 형태의 가족을 편부모가족이라고 했지만 어휘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한부모가족으로 부르고 있다.⁶³⁾

모자가족, 부자가족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모자가족으로, 이 경우 모친은 취로(就勞)와 육아의 이중고에 시달리

62) 2018년 지원내용(가정위탁아동과 동일)은 대학 입학금 : 3,000천원/인·년, 자립정착금 : 5,000천원/세대('07년 3,000천원), 직업훈련비/학원수강료 : 600천원/분기('07년 300천원)이다.

63) 김춘경·이수연·이윤주·정종진·최용용, 상담학 사전, 2016. 01. 15.

게 된다. 현재 각종 사회적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핵가족의 발전 추세와 더불어 전통적인 가정의 보호가 어렵게 된 실정에서는 사회 보장적 대책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6) 미혼모, 미혼부가족

2018년 기준 혼인가능 연령에 이르지 못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에 의한 출생아수는 545명이며, 20세 미만인 십대 산모를 포함할 경우 모두 1,300명이 십대 산모에 의해 출생하였다. 전체 미혼모에 의한 출생아 수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2018년 혼외출생아 수는 7,166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혼모·부를 위해 청소년 임신·출산 지원, 미혼모 보호, 자녀양육 지원, 돌봄 지원,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혼모들의 출산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제도 점검 결과, 제도 접근성 제고 및 통합 지원 확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십대 미혼모인 경우 가출, 가족과의 단절 등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원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다. 미성년 부부가 자녀를 함께 양육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⁶⁴⁾

또한, 미혼모·부는 생계와 자녀돌봄을 모두 홀로 책임지는 이중 부담에 노출되어 있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인 미혼모·부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양육환경의 개선은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차별 없는 출산 및 양육 정책 시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64) 허민숙, 미혼모·부 지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vol. 73, 2019.9.19., 6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혼모·부에 대한 출산 및 양육지원 확대가 미혼모·부의 건강하고 장기적인 자립기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미혼모·부를 위한 지원 정책이 통합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⁶⁵⁾

7) 다문화 가족

서로 다른 국적·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다.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하여, 다문화가족은 오랜 시간 혼혈 가족, 혼혈아 등으로 불리며 차별받아 오다가, 20세기말 세계화와 이주화로 인한 외국인 유입 증가, 국제결혼 급증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2003년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기존의 혼혈아,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족 등 차별적 용어 대신 ‘다문화가족’으로 대체하자고 권장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⁶⁶⁾

근대 이후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생겨난 미군 병사와 한국여성으로 구성된 가족,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이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주체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대두되는 외국

65) 허민숙, 위의 글, 7면.

66) 세계화와 이주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할 정도의 다문화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이는 국제결혼의 급증,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 외국인 가족의 대두 등 가족 영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인으로만 구성된 가족이나 외국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도 다문화가족으로 볼 수 있다. 시대별로 다문화가족의 모습이 변화할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개념 자체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국제결혼으로 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형성된 가족을 지칭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통칭하여 규정하기도 하며,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거주자 및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⁶⁷⁾⁶⁸⁾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이주화 현상 속에서 다문화가족의 증대는 필연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다문화가족들은 경제적 빈곤, 사회적 부적응, 민족 및 인종 차별, 국제결혼 자녀의 차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제·개정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나 인권단체들은 차별 시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⁶⁹⁾

67) 관련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또는 혼인 경향이 있는)에 있는 재한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인 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68)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넘어오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나, 그들이 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인 거주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면 다문화가족 범주에 포함된다.

69)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에 의하면, 2019년 5월 현재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125,673명이고 혼인귀화자가 41,417명으로, 총 167,090명

3. 가족실태의 변화와 시사점

1) 가족개념 정의의 다양화

전통적으로 가족은 부모-자녀 간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생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서로 간의 관계맺음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를 습득하여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 체계 등을 형성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해간다.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은 그 개개인이 타 집단의 구성원으로 존재할 때와 비교했을 때, 구성원 간 상당히 많은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구성원으로서 연속성을 갖게 된다. 또한 애착, 관심, 지원 등 애정적인 유대를 맺음으로써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⁷⁰⁾

그러나 사회·문화적 배경이 달라지면서 한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가족들의 삶도 각기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 사회·계층적 지위나 가족형태에 따라, 가족이 믿는 종교나 거주 지역에 따라 가족들이 누리는 삶의 경험이나 기회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의 개념정의도 다양해 진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변화, 경제상황과 직업관의 변화, 성역할의 변화 등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역사적 맥락은 오늘날 가족생활의 양식을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켰으며, 많은 가족학자들이 이러한 다양화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⁷¹⁾

이다. 한편, 2009년에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가족 수는 131,702가구로 나타났다.

70) 김승권,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형태의 다양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11면.

71) 가족 해체는 산업화·도시화·서구화 등의 사회 변동 과정에서 사회·문화가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사회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급속한 변동에 따른 문화 지체 및 갈등을 경험하면서 그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가족 유형과 기능의 변화

근대 핵가족은 성별분업에 근거한 불평등한 가족관계를 특징으로 하며,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합법적인 가족이라는 일원화된 모델을 제도화한다. 반면 포스트모던 가족(postmodern family)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개별화되고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며, 가족의 형성과 해체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지양하고 다양한 가족유형을 인정한다.⁷²⁾ 실제로 서구 가족법의 많은 규정이 가족성원의 평등화를 지향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가족정책에서는 시민권 혹은 거주권에 따른 복지수급권의 부여, 3세 이하 아동보육의 사회화 성별분업 타파를 지원하는 정책이 발전되었다. 또한 가족법상 파탄주의⁷³⁾ 이혼의 인정, 간통의 비범죄화⁷⁴⁾, 혼외출생아동 차별금지, 동거혼 및 동성혼 인정 등 가족에 대한 탈규제화와 다양한 가족유형을 인정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그러나 가족성원 각각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영역의 개입은 오히려 강화되는데, 이혼 시 부모 역할을 강제화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그 예이다.⁷⁵⁾

서구에서 지난 세기의 변화 중 일부는 포스트모던 가족 모형에 부합한다기보다는 핵가족 모형의 논리를 현대적으로 변화시킨 특

72) 서수경,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권 1호, 2002, 22면.

73) 결혼생활을 누가 깨뜨렸는지와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청구권이 있다. 실제로는 따로 살고 서류상으로만 유지되는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74) 우리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은 헌법재판소가 성립된 이후 유일하게 하나의 심판대상을 가지고 다섯 번의 판단을 한 사안이다. 1990년과 1993년에는 합헌 6, 위헌 3의 견해로, 2001년에는 합헌 8, 위헌 1의 견해로 합헌의 견해가 우세했으나, 2008년에는 합헌 4대 위헌 5의 견해로 나누어졌다. 이후 2015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2대 위헌 7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75) 김희자, 서구의 가족법·가족정책의 변화와 포스트모던 가족 모형, 경제와 사회, 비판사회학회, 2008, 통권 제78호, 194면.

성을 보이는데, 그것은 보살핌노동(care labor)⁷⁶⁾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족법상 보살핌노동을 행한 주부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늘고 있으며, 주부연금, 모성연금 등 보살핌 노동에 대한 수급권의 발전이 그에 속한다. 이는 성별분업의 온존이라는 근대 핵가족의 논리의 연장선이면서도 근대 핵가족 초기의 성별분업에 따른 차별을 단순한 차이의 논리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근대 핵가족 초기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이다.⁷⁷⁾

과거의 가족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복지 등 여러 부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집단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분화되면서 대부분의 기능은 가족 이외의 전문화된 제도로 이전되었으며, 따라서 가족의 기능은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기능의 축소는 다른 면에서 보면 사회의 다른 제도나 기관이 대신할 수 없는 전문화되고 특화된 기능을 가족이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⁷⁸⁾ 전문화된 가족 기능의 대표적인 것이 개인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심리

76) 지금까지 보살핌(돌봄) 노동은 가사, 육아, 간병 등과 같이 주로 가족을 위한 재 생산 노동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여성의 무급 노동이나 저임 노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으로 제공되었던 덕분에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더는 보살핌 노동을 여성들의 몫으로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맞벌이 소득이 불가피해지고 남성의 생계부양 능력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여성은 현실적으로 무급의 보살핌 노동자로서만 남을 수가 없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의 생계부양 역할이 보살핌 노동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제약을 받는 현실은 결국 그 가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보살핌 노동에 대한 경제·사회적 보상과 지원 체계가 부재한 현실은 여성 가장의 실직이나 고용 불안정과 맞물려 빈곤의 여성화를 초래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영자, ‘보살핌 노동’을 사회 몫으로, 한겨레, 2006. 4. 12.)

77) 서구의 많은 나라의 가족법은 포스트모더니의 논리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나 가족정책에서는 나라별 편차를 많이 드러내며, 많은 경우 보살핌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념의 이중배합을 꾀하는 현상을 보인다.

78) 앙드레 뷔르기에르 외, 정철웅 역, 가족의 역사 1, 이학사, 2002, 12면.

적·사회적 유대를 제공하고 다음 세대인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화하는 기능이다. 사회 전반의 변화가 가속되어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할수록 가족이 제공하는 이러한 기능은 더욱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심리적 충족에 대한 기대의 상승은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 긴장과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을 높이며, 이것이 핵가족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3) 가족실태의 변화와 시사점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가족은 분화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대를 기준으로 가족 유형의 분포를 보면, 2세대 이상의 핵가족과 확대 가족이 1995년에 78.9%였으나, 2000년에 73.9%, 2005년에 66.0%, 2010년에는 59.1%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1995년의 경우 1세대 핵가족(9.5%)과 1인 독신 가족(10.8%)은 많지 않았으나, 점차적으로 가족이 분화되어 2000년에 1세대 핵가족 11.6%, 독신 가족 13.8%로, 2005년에는 1세대인 핵가족 14.4%, 독신 가족 18.8%로 각각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세대 핵가족 16.7%, 독신 가족 23.3%로 더욱 확대 분화되었다.⁷⁹⁾

가족 실태는 형태별로 독신 및 1세대 핵가족은 증가하고 2세대 이상의 핵가족을 포함한 직계 가족 및 확대 가족은 감소하고 있으며, 독신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녀의 독립 및 결혼으로 세대 분가가 이루어지고, 부부 중심의 노년기 부부의 배우자 상실로 인하여 홀로 되는 경향이 높아지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가족 실태를 통해 볼 때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한 부모 가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저하 추세

79) 정경희·남상호·정은지·이지혜·이윤경,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01.01., 387면.

지만, 한부모 가족(모자 가족, 부자 가족)은 모두 증가하였다. 또한 결혼 이민으로 인한 다문화 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가족이 해체되는 이른바 부부의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의 실태는 단순히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측면을 넘어 가족의 해체까지 보여주고 있어, 사회 제도적으로 다양한 보완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IV. 개선 방향과 대응

1. 혼인과 가족 정책의 방향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이성간의 남녀가 혼인한 후 자를 출산하여 가족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그 이외의 다양한 가족유형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여 왔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정의는 현대사회에서 타당하지 않다. 가족유형의 변화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해체’나 ‘붕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재구조화로 파악해야 하며,⁸⁰⁾ 이에 따라 가족정책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가 이념적으로 ‘이상적인 가족’ 형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가족형태의 유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정의해야 한다.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가족 정책의 기본방향은 먼저 가족책임주의를 극복하고 가족부양책임을 국가와 공유하는 것이다. 이혼, 실직, 질병, 상해로 인한 위기는 가족 간의 갈등 또는

80) 안호용·김홍주, 한국 가족 변화의 사회적 의미, 『한국 사회』 제3집, 2000, 89-113면.

해체의 원인이 되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개별가족에 의해 해결되어 왔으나, 그 부담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국가와 사회와의 분담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가족정책도 ‘가족을 통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⁸¹⁾

그리고 가족 정책은 양성평등 관점과 통합되어야 하며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기존의 가부장제하에서의 가족정책은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⁸²⁾ 혼인과 가족정책은 가족 내에 한정하기보다는 가족 밖의 여타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추구되어야 하므로 혼인과 가족정책은 다양한 혼인과 가족 형태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젠더관점과 결합된 양성평등 가족형태, 문제가족 중심에서 일반가족대상으로의 가족정책 전환, 아동 및 노인 등의 사회적 돌봄, 육아휴직제, 직장 내 모유 수유실 설치 등 가족 친화적 기업제도 정착 등 사회 환경적 맥락 속에서 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지향점이 헌법에 규정⁸³⁾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가족관련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의 방향이 필요하다. 우리 가족법에는 혼인과 출산, 입양을 중심으로

81) 고보혜, 헌법상 국가의 혼인과 가족보호의무와 그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66면.

82) 김병록, 헌법적 존속보호 대상으로서 혼인과 가족, 2013년 9월 한국헌법학회 발표자료.

83) 예컨대, 유럽연합헌법 제93조 ②가족생활과 직업생활과의 조화를 위해 모든 사람은 임신으로 인한 해고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유급임신출산휴가와 출산 또는 입양 후에 육아휴가를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한 가족제도의 고수가 아니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응하는 개방성이 필요하다. 현대 혼인과 가족의 변화가 친밀성과 같은 관계의 질에 무게중심이 놓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가족법의 가족 개념은 지나치게 제도 중심적이다. 먼저 가족법상 사실혼 개념을 좀 더 유연하게 하여 혼인을 염두에 두지 않는 동거나 동성커플, 그리고 이들의 자녀에 대한 법적인 인정과 권리와 의무관계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혼인과 가족에 대해서도 앞에서 논의 한바와 같이 혼인과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민주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헌법적·법제적 대응

현행헌법 제36조는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⁴⁾ 그러나 동성애자의 결혼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현재의 혼인 및 가족제도의 내용이나 기능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정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성애자를 위한 법적 제도의 내용을 형성하는 경우 동성애자의 인격적인 측면, 재산법적인 측면, 가족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혼인과 같은 법적 효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⁸⁵⁾

84) 제헌헌법에서 혼인에서의 남녀동권 및 순결, 가족보호 규정 명시, 제5차 개정헌법(1962년)에서 혼인의 남녀동권 규정 삭제, 제8차 개정헌법(1980년)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규정, 현행 헌법에서 모성보호 의무규정 추가.

85) 특히 제36조 제1항은 미혼모 가족이나 공동체 가족, 동성애 가족 등 현재 나타

일부에서는 헌법해석을 통한 혼인 및 가족제도로의 포섭을 시도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제정권자들의 입헌의지를 동성결혼과 동성가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해석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 및 가족생활”은 생물학적 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⁸⁶⁾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동성 간 결혼을 기본권⁸⁷⁾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성애가 아니라 인간존엄성 및 평등권⁸⁸⁾, 성적자기결정권⁸⁹⁾과 혼인의 자유, 이혼의 자유, 입양의 권리⁹⁰⁾등과 관련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개입되면 안 된다. 아이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자신

나고 있는 다양하고 탈 제도화한 가족을 헌법적으로 승인하고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개인의 자유의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86) 이러한 취지는 현행 헌법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표현이나, 제31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87) 동성애자의 인권문제는 이회규, 동성결혼에 관한 법적 고찰, 중앙법학 제7집 제4호, 2005.12, 306면 이하 참조.
- 88) 동성혼인과 평등권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조홍석, 새로운 형태의 가족 :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공법학 연구 제8권 제4호, 2007.11, 232면 참조.
- 89)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박선영,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가족형성의 권리, 시민과 변호사, 2002.1., 60면 이하 참조.
- 90) 대표적인 판결이 2003.6.10. 선고된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의 동성결혼 허용 판결이다(Halpern et al. v. Attorney General of Canada et al, June 10, 2003. C39172 and C39174). 연방정부의 조치와 상관없이 6월10일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의 기념비적 판결을 계기로 캐나다는 이미 합법적인 동성혼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법원의 3인 합의 재판부는 혼인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한정한 현재의 연방정부 규정은 위헌이며 이를 근거로 온타리오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동성간의 혼인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한 1심 결정을 승인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은 주내 지자체들에게 이 판결이 즉각 유효하므로 동성 간 혼인신고를 접수하라고 명령했다.

의 선호를 특정 이슈에 개입시켜 남의 인권과 평등을 침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간은 누구나 가족으로 상징되는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공동체’를 이룰 권리가 있다.⁹¹⁾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성적 지향성은 쉽게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 정신도 바뀌듯이 이제 동성 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도 도덕관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개인의 인격발현을 가능하게 하고 개성신장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오늘날 사회환경, 문화, 인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 혈연 및 혼인 관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동반자 관계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혈연 또는 혼인 외의 이유로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기존의 가족관계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아직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았다. 조직화된 형태로 정책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정책 욕구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국회와 정부가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를 촉구한다.

1인가구는 연령과 혼인지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며, 교육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생활기회의 격차 또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대적 특성과 함께 1인 가구의 형성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 집단을 유형화할 경우, 크게는 미혼

91) 누구와 살 것인가는 개인적 판단의 문제다. 상대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타인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국가는 무조건 ‘이성’끼리 결혼해야 한다고 명령할 권리도 필요도 없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가장이 자식의 결혼 상대를 정해 주는 것처럼 전근대적이다.

의 청년세대와 이혼한 중장년 가구, 노인 단독가구로 구분가능하다. 청년1인가구는 소위 삼포세대⁹²⁾와 같은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유예하는 집단으로 부터 나름의 직업경력과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기 위해 결혼을 거부하는 트렌드세터(trend-setter)⁹³⁾까지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중년세대는 이혼으로 인해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차이는 있으나 이혼 역시 계층화와 맞물려 있다. 이들은 파트너와의 일정한 교류나 동거, 혹은 양육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기간 자녀와 합거 하는 등 매우 유연한 가구구성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한편 배우자 사망이후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 가구 역시 지난 십여 년간 두 배 가량 증가해왔는데, 이는 가족의 부양기능 및 돌봄 기능의 약화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평균수명은 크게 증가해 왔지만, 보살핌이 필요한 노후에 혼자서 자신을 돌봐야하는 고령사회로의 이행을 목도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경험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적응 대응할 수 있는 적실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바야흐로 ‘가족위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⁹⁴⁾

92) 취업, 연애, 결혼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란 뜻의 신조어. 20대에서 30대에 이르기까지 젊은 층이 좀처럼 연애를 하려하지 않고,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을 꺼리게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말한다.

93) ‘시대의 풍조나 유행 등을 조사하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이란 뜻. 소비자의 원츠(wants)나 니즈(needs)를 민감하게 캐치하고 다음 시대의 동향, 경향으로서, 혹은 패션 경향으로 준비한다든지 제시한다든지 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 방향으로 관심을 갖도록 리드하는 사람을 말한다.(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패션전문자료사전, 1997. 8. 25.)

94)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속한 21세기 다원화시대의 한국의 가정이 새로운 가족 형태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 5,142만명(2016년 5,127만 명대비 0.3% 증가) 또한, 1-2인가구가 55.4%(1인가구 비율이 28.6%, 2인가구 26.7%)에 이른다. 재혼가족도 21%를 차지하며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또한 18.5%에 달한

이러한 사회변화와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빈부의 차이, 산업재해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사망, 실종 등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어렵게 하며 또한 가족 해체의 증가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 변화와 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과 차별, 두 가지의 문제에 모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빈곤과 차별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 하루 빨리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 거의 전무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여성 한부모가 사회적 하위계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미혼모를 위한 출산 및 자녀양육, 학업지속 등의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시행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혼모·부지원 정책은 분야별로 설계되어 있으나, 자격요건 및 제한 정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생계 및 자녀양육, 교육·훈련 중 어느 것을 택일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조건의 마련이 미혼모·부 및 그 자녀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 및 활용성을 높이는 것 외에, 미혼모가 출산을 선택하고 자녀를 무사히 양육할 수 있는 여타의 사회적 조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홀로 출산으로 인해 자녀 출

다. 이런 통계를 볼 때 한국에서도 가족은 이미 제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현대씨앤빌더테라스, 2017인구주택총조사, 작성자 yamako, 2019. 4. 30.)

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 출산 모의 익명성(‘비밀출산’)을 보장하고 영아살해 및 유기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부 지원의 궁극적 목표는 그들의 성공적인 자립이므로, 미혼모·부가 지원정책을 발판삼아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을 통해 무사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⁹⁵⁾

또한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이주화 현상 속에서 다문화가족의 증대는 필연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다문화가족들은 경제적 빈곤, 사회적 부적응, 민족 및 인종 차별, 국제결혼 자녀의 차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제·개정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차별 시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95) 허민숙, 미혼모·부 지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vol. 73, 2019.9.19., 9면.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 2010.
- 고보혜, 헌법상 국가의 혼인과 가족보호의무와 그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김문조·김철규·최은정, 미국 동성애 역사,현황 및 사회적 의미, 한국사회 제2집, 1999.11.
- 김민중, 동성혼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비교사법 제9권 제4호(통권 제19호), 2002.
- 김승권,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형태의 다양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김춘경·이수연·이윤주·정종진·최용용, 상담학 사전, 2016.
-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시아, 2017.
- 김희자, 서구의 가족법·가족정책의 변화와 포스트모던 가족 모형, 경제와 사회, 비판사회학회, 2008.
- 김병록, 동성결혼의 헌법문제, 동아법학, 2009.
- , 헌법적 존속보호 대상으로서 혼인과 가족, 2013년 9월 한국헌법학회 발표자료.
- 김이선, 마경희 외,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 과제, 여성가족부, 2010.
- 김주수, 한국가족법과 과제, 삼영사, 1993.
- 김주수·김상용 공저, 친족·상속법-법문사, 2011.
- 김태한, 동성혼인 문제의 법률적 고찰, 가족법연구 제13호, 1999.12.
- 박병호, 한국법제사, 민속원, 2012.
- 박선영,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가족형성의 권리, 시민과 변호사, 2002.1.
- 배경숙·최금숙, 여성과 법률, 박영사, 2000.
- 서수경,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권 1호, 2002.
- 서현진, 미국의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3집 제4호,

2003.

안호용·김홍주, 한국 가족 변화의 사회적 의미, 「한국 사회」 제3집, 2000.

앙드레 뷔르기에르 외, 정철웅 역, 가족의 역사 1, 이학사, 2002.

양선숙, 동성결혼 허용의 문제, 철학과 현실 2004년 여름호(통권 제61호),

2004.6.

여성부, 가족관련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평등가족기본법(안), 2003.

야마다 마사히로 지음, 니시아마 치나·함인희 옮김, 가족 난민, 그린비,

2019.

이덕연, 혼인과 동성간의 생활 공동체, 헌법판례연구 제5집, 2003.1.

이영자, ‘보살핌 노동’을 사회 몫으로, 한겨레, 2006. 4. 1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한국여성사, 이대출판부, 1978.

이희규, 동성결혼에 관한 법적 고찰, 중앙법학 제7집 제4호, 2005.12.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9.

장혜경,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2008.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정정희·남상호·정은지·이지혜·이윤경,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12.01.01.

조영태,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 북스톤, 2018.

조재현,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학 연구 제8권 제3호, 2002.10.

조홍석, 새로운 형태의 가족 :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공법학 연구 제8권 제

4호, 2007.11.

베탄 패트릭, 존 톰슨, 이루리, 1%를 위한 상식백과, 2014.

변수정,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비혼 동거가족을 중

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12월.

최현숙, 동성 파트너십 제도화의 해외동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 리뷰

07-10, 2007.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

구(Ⅰ) 헌법상의 여성관련 조항 개정방안, 2007 연구보고서-13-1.

- 함인희, “사회변화와 가족”,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1995.
- 허민숙, 미혼모·부 지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vol. 73, 2019.9.19.
- 허순철, 미국헌법상 동성애,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2008.2.
- Attali, Jacques저 ; 편혜원·정혜원 공역. 서울 : 중앙 M&B, 1999.
- Caroline Ramazanoglu, 김정선 옮김,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Feminism and the Contradictions of Oppression)』, 문예출판사, 1997.
- Jane Freedman, 이박혜경 옮김, 『페미니즘』, 도서출판 이후, 2002.
- 헌재 1990.9.10선고 89헌마82
- 헌재 1992.10.1선고 91헌마31
- 헌재 1997.7.16선고 95헌가 6-13 병합
- 헌재 1997.7.16 선고 95헌가6-13 병합
- 헌재 2005.2.3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 병합
- 헌재 1999.12.23 선고 98헌마363
- 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22243005&code=940100#csidxf4099fad19d5980959ed71020a739cd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11304.html#csidxeed731020842c7988e4799e560c1009>

2. 외국문헌

- E. Bader, Riddle, R., & Sinclair, C., *Do marriage preparation programs help? A five year stud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Medicine, 1980.
- V. Beechey, “Familial Ideology”, in V. Beechey and J. Donald(eds.), *Subjectivity and Social Relations*,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85.
- D. Benoit & Parker, K. C.,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 *Child Development*, 65, 1994.

- K. Burns(ed.), *Gay and Lesbian Families*, Greenhaven Press, 2005.
- S. F. Duncan, Dunnagan, T., Christopher, S., & Paul. L., Evaluating the outcomes of a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stering self-reliance: insights into transformative learning. Presented at the 61st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1999.

<Abstract>

Constitutional Responding to change of Marriage and Family Concept

Byeongrok KIM*

This paper examines structural factors affecting family changes in Korea and makes implication for family policy. The Korean has greatly experienced the family changes such as the decrease of childbirth ratio and family size, and the increase of divorce rate and the diversity of family. Recent family changes was caused by information technology, labor market flexibility, demographic imbalance. That is, family changes is a social transform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post-industrial society, and major characteristics of such changes is familial diversity. But this changes could not be understood by simply enlargement of the rights to choose.

We cannot deny that all kinds of family are isolated from community, being reduced in scale and dissolved in the long term individualizing trend owing to the materialization of human relationship in the capitalist societies. Furthermore, divorce and remarriage rates have dramatically grown up and the recent influx of foreign labor has increased ethnic diversity. These trends have surely led to the diversification of family, the emergence of new family styles such as a single parent family and a step-family. It is understandable to take the phenomenon for granted and to argue for supporting the new family styles to function properly.

However, this view seems to be so much obsessed with criticising the conservative pro-family ideology which regards only the ‘standard-family’ as normal. The author of this paper tries to show that the family diversity

* Prof, College of Law Chosun University

argument can rationalize or even mystify the dissolution of diverse traditional families by representing it as ‘family diversity’. As a matter of fact, the appearance of family diversity can be a superficial outward show of converging diverse families into ‘temporal monogamy’.

Key Words : Marriage, Divorce, Family, Family Form, Diversity